

성남시의회 의원의 정활동비와 회기수당및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1336
----------	------

2004. 2. .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(2003. 12. 18)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를 월550,000원에서 월900,000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200,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2항)

□ 검토의견

-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조정하고,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난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,
-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의정활동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133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2004. 2. .

□ 제안이유

- 현재 안건을 표결할 때 사용중인 표결방법에 전자투표 방법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함(안 제41조제1항))
-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(안 제42조제2항)

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 방법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이는 의회의 내부 회의진행과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133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2004. 2. .

□ 제안이유

- 성남시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칙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함(안 제2조)
- 전자 표결에 의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방법은 의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(안 제3조제2항).
-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음(안 제4조제1항)
- 투표는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찬성, 반대 버튼을 누름(안 제4조제3항)
- 전자투표 시간은 20초 동안 실시함(안 제5조)

□ 검토의견

- 본 규칙안은 전자투표에 관한 회의진행과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.